

고 시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6-98호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, 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320호(1970.7.2.)로 최초결정된 관악구 신림동 103-141번지 도시계획시설(공원) 부지 내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중복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원, 주차장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8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- 결정취지 : 관악구 신림동 103-141번지 일대 저층주거지 원룸·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존 공원 하부공간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 공원과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고자 함

2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

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, 주차장)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, 주차장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공원	어린이공원	관악구 신림동 103-141	1,320	증)39	1,359	1970.7.2. (건고320)	공원 지하부 주차장 중복결정(1,359㎡)
신설	주차장	-	관악구 신림동 103-141	-	증)1,359	1,359	-	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, 주차장) 결정(변경) 사유서

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공원	· 공원 변경 - 면적 : 1,320㎡ → 1,359㎡ (증 39㎡)	· 지적공부상 면적 반영에 따른 시설 면적 변경
주차장	· 주차장 신설 - 면적 : 1,359㎡(지하1층~지하4층)	· 주차여건이 열악한 신림동 103-141번지 일대 주택밀집 지역에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

3.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※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
4. 열람장소 : 관악구청 도시계획과(☎879-6371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[도시계획시설(공원, 주차장) 결정도(기정)]



[도시계획시설(공원, 주차장) 결정도(변경)]

